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입법조치

박인섭/KBS 보도국 과학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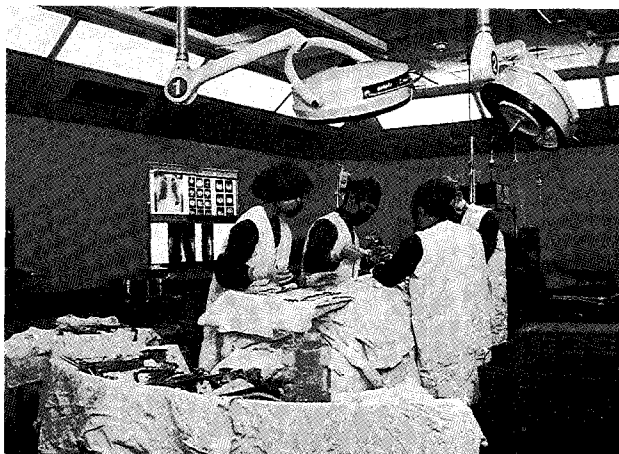
최근 의료계에서는 간장과 신장 또는 췌장 등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또는 흡사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3월 19일 서울 백병원에서 뇌사자의 간을 말기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경과가 좋아 70여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6월 17일에는 서울중앙병원에서 뇌사자의 신장과 각막 등을 여러 사람에게 이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장기 이식수술이 진행됐고, 이어 7월 4일에는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췌장과 신장을 한 사람에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행해졌다. 이어서 7월 11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선천적으로 담도가 막혀 간경화로 진행된,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된 어린아이에게 역시 뇌사상태에 빠진 중국교포여인의 간을 5분의 1정도 잘라서 이식하는 부분간이식수술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돼 성공했다. 또한 두살된 어린이가 어머니의 콩팥을 이식받는 등 간장과 콩팥, 또는 췌장이식수술이 서울대병원이나 세

브란스병원, 서울중앙병원, 한양대병원 등 각 병원마다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은 장기의 이상으로 생명을 지탱해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해 새롭고 건강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에 분명하고, 의료계에서도 난치병의 정복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학적인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뇌사를 발판으로 한 수술행위가 과연 적법한지의 여부이다. 아직 법적으로는 뇌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서 뇌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사실상의 살인행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사에 의한 장기이식을 시술한 의사들은 일단은 형사입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거나 심지어 검찰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문제삼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 의료계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시술을 강행하기보다는 입법조치와 뇌사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하더라도 법이 뇌사를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의료인들이 인술의 차원, 또는 난치병의 정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더구나 경쟁적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떼내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뇌사자 -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 - 의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밀어붙이면 자칫 개인의 공명이나 의료기관의 성가만을 높이는데 집착하기가 쉽고 이는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뇌사와 장기이식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의학계에서는 수많은 불치의 환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뇌사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훼손할 수 없다는 전통적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국민정서상,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윤리상의 반대도 만만치는 않다. 뿐만 아니라 뇌사판정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 뇌사판정 이후 장기이식과 관련돼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 즉 장기이식 수혜자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금전거래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장기이식은 더이상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이제는 어려운 술기가 아니라고 한다. 불치의 환자에게 새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장기이식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뇌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장기이식으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와 여러가지 우려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식받은 환자를 제때 제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료계에서는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 넘고 밀어붙이는 초법적인 뇌사자의 장기이식시술을 강행하기보다는 입법조치와 뇌사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